



>> 발포합성수지 공제조합 FQA www.eps.or.kr

Q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누구인가요?

A 발포합성수지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받는 의무생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전자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자
- ② 전자기기류, 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·사무기기,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 및 수입업자
- ③ 농축수산물상자 제조업 및 수입업자
- ④ 음식료품류, 의약품류 등의 제조업 및 수입업자
- ⑤ 농축수산물(자가 브랜드 부착)의 판매업 및 수입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제조 및 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 원 이상인 수입업자 중 전년도 연간출고량이 0.8톤 이상인 제조 및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.3톤 이상인 수입업자

Q 협회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?

A 당협회 홈페이지(www.eps.or.kr)에 접속하여 의무생산자 가입하기를 통해 가입하거나 협회로부터 참여약정서를 송부 받아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.

- 제출서류는
- 참여약정서 2부(협회 및 의무생산자 각 1부 보관)
 - 전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·포장재 출고·수입 실적서 1부(별지 양식) : 전년도 실적에 없는 경우 당해연도 예상 출고·수입량
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입니다.

Q 발포합성수지의 2008년 재활용 의무율은 얼마인가요?

A 발포합성수지(EPS, EPP, EPE, EPU 등)의 2008년도 재활용 의무율은 74.8%입니다.



Q 협회 가입의 경우 의무생산자의 분담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A 발포합성수지의 분담금은 300원/kg입니다. 단, 재활용체계가 완비된 EPS의 경우 사용용도에 따라 분담금이 아래와 같이 경감 됩니다.

구분	가전완충재		기타 포장재	비고
	역경로회수	일반		
일반분담금	35원/kg	80원/kg	95원/kg	

- 재질 미구분 자료 제출시 경감혜택 없음
- 분담금은 재활용 의무량(출고량×의무율)에 대하여 기준 비용을 적용하며 가입년도에는 일반분담금의 10%에 해당하는 기본분담금이 함께 부과됨. 가입비, 년회비 등 기타 비용은 없음

Q 재활용 분담금은 언제 납부하면 되나요?

A 4월 중 업체별로 통보되는 공문에 의거 납부하시면 됩니다. 분담금 규모에 따라 분납도 가능합니다.

- 기본분담금 : 년 1회(5월)
- 재활용 분담금 500만원 미만 : 년 1회(5월)
- 재활용 분담금 500만원 이상 1,000만원 미만 : 년 2회(5월, 7월)
- 재활용 분담금 1,000만원 이상 : 년 4회(5월, 7월, 9월, 11월)
- 재활용 분담금 미납 시 제재조치
 - 납부 독촉후 가산금 부과
 - 체납 1개월이상 지연시 이사회 결의로 제명, 참여약정 파기 및 관련기관에 통보(해당 회원사, 환경부, 한국환경자원공사)

Q 만약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의무 이행을 못하는 경우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A 의무생산자가 의무 이행을 못하는 경우 최대 재활용 기준비용의 1.3배에 해당하는 재활용부과금이 환경부로부터 부과됩니다. 금년도 발포합성수지 단일재질 포장재의 재활용 기준비용은 kg당 317원입니다.

